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11
----------	------

2023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3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 : 2023년 10월 23일
- 라. 상정일 :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11월 2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상훈)

가. 제안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 2023.6.11.)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명 등에 대한 의견제시 조항 정비(안 제2조제2항)

- 지명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3조제1항)
- 위원 해촉사유 규정 신설(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의견 청취 범위 확대 및 자료 제출 내용 추가(안 제9조)
- 기타 자구 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법령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8. 10. ~ 8. 30.) 결과: 의견 1건(수용)

- 의견 내용(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 안 제5조(위원의 해촉)제1호의 해촉 사유인 ‘심신장애’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적용할 우려가 있어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의 기준을 따르게 수정 필요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조례 개정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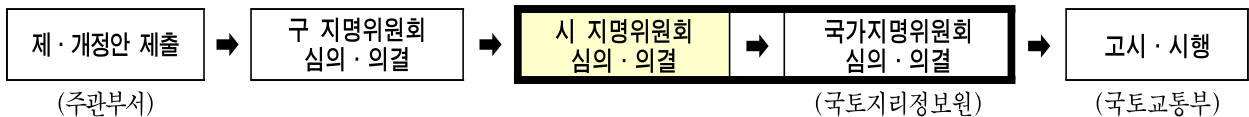
- 본 개정조례안은 지명위원회 근거 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2023.6.11.)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명위원회 관련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일치시켜 조례의 적용 및 해석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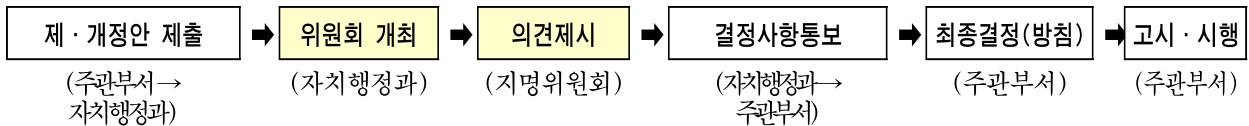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 지명위원회 조례
- 구성현황 : 9명(당연직 2, 위촉직 7)
 - 위원장(행정1부시장), 부위원장(행정국장), 위촉직위원(국문학자, 지리학자 등)

심의대상 절차 및 기능

- ① 의결(자연지명) : 산맥, 산, 폭포, 바위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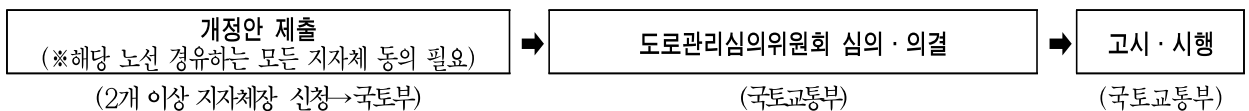


- ② 의견제시(인공지명) : 도로·터널·지하보도·공원·지하철역 등 시설명칭



③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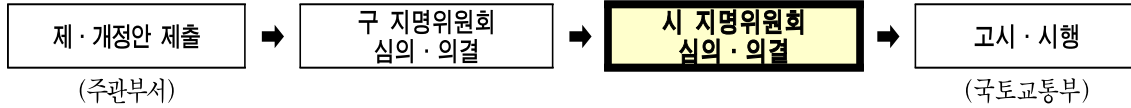
- 고속 국도(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노선명 제·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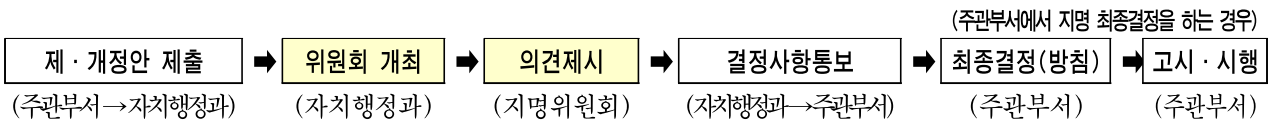
- 철도 역명 제·개정 :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개정 후) 위원회 절차 및 기능

① 의결 : 자연지명(산, 바위 등), 인공지명(공원, 도로 등)



② 의견제시 : 지하철역,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기타(종전과 동일)

- 국가소유(철도나 도로) 시설물 지명은 국토부 산하 위원회에서 제·개정
- 지자체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시 지명위원회 의결을 통해 의견 제시

<최근 5년간 개최실적('19~'23.9.30.)>

◆ 위원회 구성('85년) 이후 매년 1~4회 개최 ('23년 7월 현재 총 88회/ 1,466건 심의)

구 분	개최횟수 (총 건수)	개최일시	심 의 건 수	비 고
2019	2회 (19건)	2019.3.29.	1건(교량명)	서면심의
		2019.12.9.	18건(지하철 역명 5건, 하천명 1건, 시설명 4건, 공원명 8건)	
2020	2회 (16건)	2020.11.25.	5건(도로시설명)	
		2020.12.14.	11건(도로시설명 3건, 지하철 역명 8건)	
2021	4회 (63건)	2021.3.17.	25건(공원명 25건)	서면심의
		2021.5.20.	5건(지하철 역명 5건)	
		2021.8.26.	3건(교량명 1건, 지하철 역명 2건)	서면심의
		2021.10.27.~29.	30건(공원명 26건, 도로시설물 4건)	
2022	2회 (18건)	2022.3.18.~22.	16건(공원명 15건, 지하철역명 1건)	서면심의
		2022.7.26.~28.	2건(교량명 1건, 지하철도명 1건)	서면심의
2023	1회 (3건)	2023.5.4	3건(지하철역명1건, 교량명1건, 터널명 1건)	

나. 세부 내용 검토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지명위원회 관련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위임된 사항--- ----- -----.

- 동 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2023년 6월 11일 개정·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위임 근거조항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
2.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도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도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 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안 제2조제1항) 현행조례 제5조1)의 의견제시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려는(안 제2조제2항)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2조(기능) ① --- 다음 -----

- 1)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의견제시) 위원회는 도로·교량·터널·램프·지하보도·공원·광장·지하철역 등의 시설명과 뉴타운사업지구 등의 구역명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p>를」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생략)</p> <p>2.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p> <p><u><신설></u></p>	<p>-----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지명</u>-----</p>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대상이 아닌 지하철역 등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	-----------------------------------------------------------------------------------------------------------------------------------------------

- 동 내용은 기존 의견제시 대상이었던 공원, 도로 등 인공지명을 지명위원회 의결대상으로 포함하고, 지하철역은 현행과 같이 의견제시 대상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9의2호)
- 다만, 지하철역도 지명위원회 의결대상에 같이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 행정국은 도시철도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명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명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도시교통실(도시철도과)에서 방침을 수립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7조2)에서는 주소 정보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명위원회의 도로명 심의와 혼선의 소지는 없는지, 두 위원회의 기능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안 제3조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9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u>5명 이상</u> 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 ----- ----- ----- <u>15명</u> ----- ----- - <u>8명 이상 11명 이하</u> 로 ----.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② ----- <u>맡고</u> ----- <u>맡는다.</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 또	⑤ -----

- 2)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2.30>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는 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말고-----

----- 말한다.

⑥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
2.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도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도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 동 내용은 상위법령 기준에 맞춰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하고, 이 중 민간위원수를 11명 이내로 하면서 민간위원 수 기준의 하한선을 8명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바, 위원선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자격기준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4) 위원 임기(안 제4조)

- 안 제4조는 위원 임기의 연임 관련 사항 등의 규정 표현 문구를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u>임기 중 남은 기간</u> 으로 한다.	제4조(임기) ----- ----- 한 차례 <u>만</u> -----. ----- ----- ----- 임기의 ----- -----.

5) 위원의 해촉(안 제5조)

- 안 제5조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위원 해촉 관련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규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견제시) 위원회는 도로·교량·터널·램프·지하보도·공원·광장·지하철역 등의 시설명과 뉴타운사업지구 등의 구역명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
2.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도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도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 다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서는 ‘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위촉 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원회 출석률 기준 해제 사유를 별도 명시할 필요성은 없는지, 또는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위원회 관련 기본조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규정을 준용토록 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장의 직무(안 제6조)

- 안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고(안 제6조제1항) 위원장 부재시 대행권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안 제6조제2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 동 내용은 위원장의 직무를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위원장 부재시와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재시 직무대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7) 회의 소집 및 정족수 등(안 제7조)

- 안 제7조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관련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p>	<p>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p>

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
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
2.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도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도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안 제7조제4항)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는 없는지, 경미한 안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8) 지명의 조사(안 제8조)

- 안 제8조는 지명의 조사 관련 규정 표현 문구를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명의 조사) ①·② (생략)</p> <p>③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시·도 경계간 개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p>	<p>제8조(지명의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경계에 있는 구역의 지명</u>----- ----- -----.</p>

9)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안 제9조)

- 안 제9조는 위원회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 다만,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3)), 법률의 위임없이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경우 위법 논란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0) 부 칙(안 부칙)

- 안 부칙 제2조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관련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타당한 경과조치인 것으로 사료됨.

부 칙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기존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전날 종료된 것으로 본다.</p>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3)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7항”을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3조, 제4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중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 밖의 지명”을 “지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대상이 아닌 지하철역 등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중전의 제2조)제1항 중 “9명”을 “15명”으로, “5명 이상으로 하여야”를 “8명 이상 11명 이하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되며”를 “맡고”로, “된다”를 “맡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을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으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임기 중”을 “임기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

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제8조로 하며, 제6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서 회신과 서면심의회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제3항 중 “시·도 경계간 개재지명”을 “경계에 있는 구

역의 지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기존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전날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위임된 사항----- -----.</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생략)</p> <p>2.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p> <p><신설></p>	<p>제2조(기능) ① --- 다음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지명</u>----- --</p>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대상이 아닌 지하철역 등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여야</p>	<p>제3조(구성) ① ----- ----- ----- ---- 15명 ----- ----- - 8명 이상 11명 이하로 ----.</p>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④ (생략)

⑤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견제시) 위원회는 도로·교량·터널·램프·지하보도·공원·광장·지하철역 등의 시설명과 뉴타운사업지구 등의 구역명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
말고-----
말는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말고-----
----- 말는다.

⑥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
-----.

제4조(임기) -----
----- 한 차례
만 -----

----- 임기의 -----
-----.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제6조(지명의 조사) ①·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시·도 경계간 개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 ~ 제10조 (생략)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회신과 서면심의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지명의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경계에 있는 구역의 지명-----

-----.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